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 체계 구축 및 국제적 조화 방안

정명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 론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겨우 국가 부도상태인 모라토리엄을 모면하고, 1998년 2월 25일 '국민의 정부'로 명명된 신정부가 출범하였다. 시장경제 도입, 구조조정으로 대표되는 IMF체제에서 가뜩이나 기초가 약한 우리의 식품산업은 더욱 어려움을 겪어 오는 과정에서 식품위생 관련 행정 조직도 큰 변화가 있었다. 즉, 식품의약품 안전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행정조직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분리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독립체제로 출범하였으며, 식육제품, 유제품, 난제품 등 축산가공식품이 식품위생법에서 농림부로 이관되어 축산물가공처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국내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식품의 오염 가능성 증가, 방사선 조사 등 새로운 가공 기술의 사용에 따른 유해 물질 생성에 대한 의구심 증가,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해 물질의 발견, 수입 식품의 급증 등에 따라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급증하고 있고, 국민의 의식 수준도 빠른 속도로 향상되어 좀 더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를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다시 말 할 필요도 없이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원하는 것은 인간 본연의 권리이며 욕구이고, 이와 같은 욕구는 전세계적으로 동일한 것 같다. 최근에 아프리카 난민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곡물 중 존재할 수 있는 잔류 농약에 대해서도 현지에서 강력하게 문제가 제기 되고 있을 정도로 이제 식품의 안전성은 빈부나 국가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전세계인의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규정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출범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었는데,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의 확대실시, 병원성 대장균 O-157, 리스테리아균 등을 포함한 식품 위해 미생물 기준·규격의 신설, 잔류농약 설정항목의 확대 및 위해 정보를 근간으로 한 수입식품 검사업무의 전산화 등이 있다.

대외적으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 관련 분야의 활동 강화와 국제식품규격(CODEX)의 중요성 증대, 아시아태평양경제기구(APEC)의 식품 관련 통상현안 준비 등 식품행정에 있어 세계표준(Global Standards)화와 이에 따른 국제적 조화 방안 마련 등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식품산업은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축수산물의 중요한 소비주체인 동시에, 양질의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우리의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식품접객업소는 '99년 12월 말 현재 각각 179,794개소(표1참조), 661,886개소(표2참조)로서 외형상으로는 거대한 듯 보이지만, 대부분 중소 규모 업소로 구성되어 있어 그 구조가 취약하고, 농민보호 측면과 단순 소비재를 생산하는 업종으로 취급되어 정부차원의 지원이 미흡한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식품 안전 보장을 강화하면서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육성·진흥하는 방안의 도출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식품안전 보장과 관련하여 국제적인 조화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1. 위생관리 대상인 우리 나라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 (단위: 개소)

연도	계	제조 가공업	첨가물 제조업	즉석 판매업	식 품 운반업	식 품 판매업	식 품 소분업	식 품 보존업	용기 포장류
1996	136,683	12,359	259	38,489	577	81,958	1,975	207	859
1997	148,895	12,212	266	43,562	689	88,657	2,359	210	940
1998	153,427	14,070	300	47,460	528	87,190	2,841	216	822
1999	179,794	15,306	327	51,004	420	108,049	3,648	152	888

표 2. 위생관리 대상인 우리 나라의 식품접객업소 (단위: 개소)

연도	계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홍주점	집단급식소
1996	582,258	66,579	467,632	21,943	16,878	9,226
1997	614,697	70,604	492,955	24,017	17,117	10,004
1998	647,708	68,810	525,514	24,550	17,370	11,464
1999	661,886	70,362	535,801	22,706	19,573	13,444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 행정의 개요

식품은 우리가 매일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각종 영양소의 공급원으로서 좋은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식품 중 존재할 수 있는 오염 물질, 미생물 등에 의해 인간의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식품이 갖는 본래의 역할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식품위생이며, 이를 위한 정부의 각종 활동을 식품위생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식품위생을 “재배, 생산, 또는 제조 시부터 사람이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모든 식품의 안전성, 완전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조치(Food Hygiene means all measures for ensuring the safety, wholesomeness, and soundness of all stage from its growth, production or manufacture until its consumption)”로 정의하고 있고, 이와 같은 정의는 우리나라의 식품위생 행정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우리의 식품위생 행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영업의 허가 관리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하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업에 대하여 정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영업의 허가관리 시는 영업의 종류별로 정하여진 시설 기준에 해당한지를 확인한 후 허가함으로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제조, 가공, 조리될 수 있는 근본적인 여건이 확보 되도록 한다.

2) 식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설정 및 관리

영업 허가에 의한 제조, 가공, 조리되어 국민에게 제공되는 식품이 안전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식품 등에 대한 기준·규격 관리이다. 이를 위하여 모든 가공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식품별 기준 규격과,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범위 및 규격, 또한 이와 같은 식품첨가물의 식품에 사용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 식품 중 존재할 수 있는 오염 물질(항생물질 등, 방사능물질, 농약, 중금속, 아플라톡신, 마비성 패독 등)에 대한 최대잔

류허용기준과 식품에 사용되는 기구·용기 포장재의 기준·규격도 설정하고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3) 검사, 감시 및 지도

판매, 제공되는 식품이 안전한가는 검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이와 같은 국가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각 지방청,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및 검역소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국가 공무원인 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 관련 영업소에 대한 감시와 지도 업무를 통하여 좀 더 안전한 식품의 제조, 가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식품위생 행정상 어려움

식품이란 근본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전제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고, 정부 당국도 좀 더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식품 정책 결정에는 쉽지 않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즉, 식품위생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안전한 식품의 공급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어떤 식품이 안전한가 여부의 판단에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1) 안전성 향상을 위한 물질 사용

한 예로 보존료를 생각해 보기로 하면, 보존료는 식품중 미생물의 증식에 기인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하고 있으나, 이의 과다 섭취 시 그 가능성은 아주 낮으나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식품위생 행정 당국은 보존료의 첨가에 따른 이익(미생물의 증식에 기인된 국민 건강상 위해 발생 방지)과 손해(보존료 섭취에 따른 국민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의 평가를 통하여 예상되는 이익이 가능한 손해보다 대단히 크기 때문에 국민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무시될 수 있는 첨가 수준으로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2) 완벽한 위생행정 정책 수립의 어려움

일반적으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정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나 알다시피 식품 중에는 수천 가지의 유해물질이 있으며 이중에는 자연적으로 그 식품 내 존재하는 것과 외부로부터 오염된 것, 사용된 것 또는 가공 공정 중에 생성된 물질이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식품 중 바람직하지 못한 물질들에 대하여 모두 기준·규격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과학적, 경제적으로도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 즉, 식품에 존재할 수 있는 물질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것들 전부에 대하여 기준치를 정하여 대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또한 그 물질이 식품 중 적은 양으로 존재하여 통상적인 식생활 중에서는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규격을 설정할 과학적인 필요성이 없다. 더 나아가서 아직 그 물질의 위해 발생 가능 여부에 대한 정확한 과학적 평가가 없는 경우라면, 기준·규격도 설정할 수 없는 것이다.

3) 전문인력·예산의 부족

식품위생관련 업무는 전문성을 기본으로 하여 수행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시·도 행정기관이나 시·군·구에는 식품위생계가 없어진 경우도 있고, 직원도 불과 1~2명이 근무하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도 제한된 직원(752명)으로 연구, 감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많은 사람들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최고의 선진국과 비교하여 우리 나라의 위생행정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위생행정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국과 같은 예산과 인력을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4) 오염 물질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괴리

“식품의 안전성”이란 항상 그 사회의 문화적, 기술적 상황에 근거한 판단 사항이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 따라 식품의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같은 국민의 식품 구매 형태가 그 나라의 식품 생산 및 공급 구조와 더 나아가서는 식품위생 행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상식 선의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 가능성은 과학적 기준이나 실제 위해 발생 정도에 의해 계산된 위해 발생 가능성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하여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미국의 “식품유통연구소”에서 1991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80%가 식품 중 잔류 농약을 가장 위험한 위해 발생 가능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였고(표 3), 다른 보고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3.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 순위

소비자 우려 순위	항 목
1	식품중 잔류 농약
2	식품중 항생제, 호르몬제
3	방사선 조사 식품
4	식품첨가물 (보존료등)
5	착색료

그러나 과학적 사실과 실제 위해 발생 정도로 판단한 위해 발생 가능성 우선 순위는 이와 같은 소비자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식품 전문가에 따르면,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 가능성 우선 순위는 첫째가 미생물 오염이고, 그 다음이 부적절한 식생활에 기인된 영양적 불균형이다. (표4)

표 4. 식품에 의한 위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미국 FDA의 우선순위

발생순서	위해발생 요인
1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오염
2	영양학적 불균형
3	환경오염물질
4	식품중의 자연독
5	잔류농약
6	식품첨가물 (* 6번 이후는 생략)

이와 같이 상반된 두개의 결과를 보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 정책의 우선

순위가 어디에 두어져야 할지, 또한 이와 같은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대국민 교육 및 홍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지 자명해진다.

식품위생 행정의 발전 방향

지금까지 정부 당국이나 식품 관련 학자들은 제조 공정의 개선을 위한 식품위해요소중점 관리(HACCP) 제도를 도입하여, *Listeria monocytogenes* 등 식중독균이나 식육 중의 잔류 수의약품 등 새로운 유해물질에 대한 대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기준 규격의 과학화, 국제화를 통하여, 좀 더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식품위생 행정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1) 모니터링 위주 업무로 전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안 요인을 찾아내어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 해 줄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고춧가루의 경우, 고춧가루의 문제를 파악하여 고춧가루 생산 공정의 위생지침 설정 및 필요한 규격의 설정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농산물 중 잔류 농약의 경우, 시중에 유통되는 농산물을 수시로 수거 검사(Compliance test)하고, 필요시 폐기 조치나, 검사 결과를 발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식품 산업계(생산 농어민 포함)의 자율 관리 기능 유도

식품의 안전성은 행정 당국의 행정처분으로는 충분히 확보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이와 같은 식품을 생산하는 농어민이나 식품 산업체가 좀 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먼저 요구된다. 따라서 이들 농어민이나 식품 산업이 안전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자율 관리 기능을 조장해 주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협회, 생산자단체 등의 자가규격 활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업계 스스로가 안전한 식품을 생산하는 풍토를 만들고 또한 산업계의 신제품개발의욕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감시와 지도를 병행하여야 하겠다. 즉 모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처벌을 지양하고, 지도를 통하여 재발이 방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법의 적용과 제도의 마련으로 식품의 생산에 다시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저한 감시가 요구된다.

3) 국민 의견의 지속적인 수집 및 전국민의 명예감시원화

현실적으로 행정당국, 검찰, 경찰에서만 모든 식품위생안전이나 식품범죄행위를 감시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민에게 적절한 교육 홍보를 실시하여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집 평가하여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고정신 고취 및 긴급 전화(1399)의 홍보의 활성화를 통하여 편리한 신고체계를 갖추고 전국민을 식품명예감시원으로 만들어 부정·불량식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식품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의 실효성 확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식품관련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가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무허가식품제조행위에 대하여 일본은 1년 이하 징역, 10 만엔 이하 벌금이나 우리 나라 최고형은 5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일

본의 경우보다 다소 형량이 높으나, 실질적인 법 집행에서는 판결 형량이 낮아 중국산 불량 고추를 밀반입하여 판매한 식품사범을 1심에서 전원 석방 하는가하면 95년도 춘천지방법원에서는 무허가식품제조업자에 대하여 7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적도 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식생활을 담보로 하여 범죄행위를 하는 식품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대국민 교육 및 홍보 강화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식품위생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 또는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되므로, 소비자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즉 위해정보전달(risk communication)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식품 행정당국에 있다고 하여도, 이를 정부 혼자서 책임지기에는 어렵고, 관련 학자나 연구자 더 나아가서 언론을 포함하는 관련자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된다.

6) 사건별 특별 작업반(Task force)의 구성 및 운영 활성화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는 식품안전성 관련 사건이 발생해도 몇 일 후면 모두 까맣게 잊고 무관심해지곤 한다. 문제가 발생되면 사건별로 현황 파악, 조사 결과의 평가, 조치 방안의 강구 등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다. CODEX와 같은 국제회의에서의 중대한 국가의견 수립 시에도 의제별로 이러한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업반원 중에서 국제회의를 지속적으로 참석할 수 있는 국제 통상 전문가의 양성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7) 장기적 안목의 행정 지향

지금까지 우리나라 식품 위생 행정 정책은 좀 더 장기간의 연구나 검토 없이 단기간에 수립, 집행되는 경우가 많아, 정책의 실효성도 낮고, 예상하지 못하였던 문제점이 밝혀져,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하나의 정책을 수립하기 전에 충분한 자료의 수집, 연구 검토, 각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충분한 연구 검토를 거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도록 하여야 하겠다.

8) 지속적인 식품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이용

식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식품을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식품 위해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국내 식품 및 수입 식품의 모니터링 검사에 활용하여야 할 것이며, 정보수집을 위해서 주요 식품교역 국가에 주재관 파견을 대폭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즉 식품의 국제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정보의 수집, 이용 체계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9) 행정 인력의 전문화 및 자율성 보장

식품위생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식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책 판단이 필요로 하므로, 이와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화가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인력의 전문화와 함께, 전문성을 근거로 한 자율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행정의 융통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겠다.

10) 원료 생산, 제조 및 유통 과정 중의 원천적인 안전성 확보 방안 강구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제도의 정착
- 자가 품질 검사 강화
- 식품 오염 물질 잔류허용기준 확대 설정 및 모니터링 사업 확대
- 유통 상의 냉장·냉동시스템의 확충 등 유통 구조개선
- 유통 중인 식품의 수거 검사 등 사후 관리 강화

이러한 사업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영세 기업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식품진흥기금의 활용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1) 과학적·국제적 조화된 기준·규격 설정

기준·규격의 과학화 국제화도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겠다. 즉 식품 등의 기준·규격을 Codex 기준·규격 및 선진국의 기준·규격과 조화시켜,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불필요한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고, 제조 가공업자의 신제품개발 등 다양한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준·규격 관리를 품질 중심에서 위생 중심으로 전환하고, 식품첨가물공전 대상 품목의 확대 및 사용 기준 정비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12) 장·단기적인 연구 사업의 실시

기준·규격의 설정 등은 충분한 국내 모니터링 자료와 국민 총식이 조사 및 과학적인 위해 평가를 통하여 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위생과 관련된 장·단기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예산을 위해서는 연구기획 및 예산분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할 조직 및 인력이 필요하다.

국제적 조화를 위한 노력

1) CODEX에서의 활동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는 소비자의 건강보호와 식품의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보와 정부간 또는 비정부간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식품규격 작업의 조화 촉진을 위하여 1961년 제11차 “FAO 컨퍼런스”와 제29차 “WHO 집행 이사회” 및 “FAO/WHO 합동식품규격에 대한 컨퍼런스”的 권고에 따라 1962년에 설립된 “FAO/WHO 합동식품규격 사업단 (Joint FAO/WHO Food Standards Programme)”의 사업으로 설립된 정부간 (intergovernmental) 기구로써 우리 나라는 1971년에, 북한은 1981년에 가입하였다.

Codex Alimentarius는 라틴어로써, Codex는 법령(code), alimentarius는 식품(food)을 말 하므로 이를 합쳐 Food Code(식품법)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식품에 대한 기준 규격을 포함하는 식품법전이라 할 수 있다. 총 회원국은 165개국이다.

CODEX의 의미 중대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에서는 CODEX 기준 및 규격을 연구하여 불량 수입식품으로 인한 위해의 방지와 우리 식품공전과의 조화를 모색하여 국제 기준 및 규격과 국내 기준·규격의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상마찰을 사전에 방지할 목적으로 1995년 2월부터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국내에 CODEX 사무국을 설치한 후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한국 CODEX 사무국의 연락처는 380-1558, 1559, 1564이다. CODEX 사무국에는 현재 10명의 전문인력이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CODEX 기준 및 규격과 국내 기준 및 규격의 겸토, 비교를 통해 식품 및 식품첨가물 규격을 비롯한 관련 기준 및 규격의 제·개정시 반영토록 의견 개진
- 관련 CODEX 회의에 참석하여 국가의견 개진
- CODEX 규정집 및 CODEX 활동사항의 발간을 통한 CODEX 기준 및 규격의 홍보

2) 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에서의 활동

7년여의 오랜 시련 끝에 UR협정이 타결되고, 바로 94년 4월 15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각료회의에서는 세계무역기구인 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설립 협정문에 정식 서명하였다. 그 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인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GATT)를 WTO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가 착실히 진행되어 95년 1월 1일부터 WTO가 발족되어 국제적인 경제 질서는 국경없는 시대로 접어 들었다. 세계무역기구는 상품과 서비스 무역 증대를 통한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서 136개 회원국 (2000.4.30 현재)으로 구성되어 있고, 신규 회원가입은 관세 등에 대한 양허(안)을 제시하여 모든 기존의 회원국이 찬성하여야 가입됨. 식품과 관련된 주요 협정문으로는:

○ 위생 및 식물위생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

회원국은 식품안전관리 조치를 정할 때 Codex의 국제규격과 조화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국제규격보다 강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함. 즉, 식품의 교역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국제 기준, 지침 및 권고로서 CODEX 규정을 참고하도록 되어있다. 주요 규정내용으로는 동등성 (Equivalency), 일관성 (Consistency), 투명성 (Transparency), 과학성 (Scientific evidence) 등이 있다

○ 무역상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GATT의 Tokyo Round의 결과로 제정 (1980.1.1 시행)하여 주로 비관세분야인 기술 기준·규격 등을 통한 무역규제 억제를 위하여 표준(standard) 및 기술규정(technical regulation), 제품의 기준·규격, 제조공정, 표시, 적합성평가 등에 적용된다. TBT협정 적용 예외 사항으로는 안전성(safety), 보건(health),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또는 국가보안(national security)을 위한 제도 등이 있다.

3)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기구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관련 활동

APEC은 선진국 2010년, 후진국 2020년을 목표로 1989년에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 총 21개 회원국이 경제적인 문제를 중점으로 논의하여, 지역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다자간 무역의 장점을 살려 무역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 무역 및 투자 위원회 (Committee on Trade and Investment)

무역 및 투자의 자유화 분야를 다루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지역 내의 자유무역 및 투자와 원활한 교역을 목적으로 한다. 9가지 원칙은 포괄성 (Comprehensiveness), WTO-Consistency, Comparability, 무차별성 (Non-Discrimination), Transparency, 현상 동결 (Standstill), 동시 착수, 지속적 추진 및 차별적인 시간 계획에 대한 원칙 (Simultaneous Start, Continuous Process and Differentiated Time Tables), 신축성 (Flexibility), 협력 (Cooperation) 등이다.

○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무역 및 투자 위원회에 속해 있으며, 식품 전문가 회의의 상위 위원회로 식품산업을 포함

하는 모든 제조업의 국제 규격과의 일치, 상호인정협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며, 의장국은 필리핀이다.

○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어업 자원의 적절한 보호 육성을 통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이용 촉진, 수산물 가공에 HACCP의 이용 장려, 농업 기술의 개발 교역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 식품전문가회의 (Sub-Committee on Standard and Conformance Expert Meeting on Mutual Recognition [Food Products])

식품전문가회의는 식품의 상호 인정 협정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하여 표준과 적합성 소위원회에서 식품에 관련된 상호인정협정을 토의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으며, 의장국은 호주이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총 29개 회원국이 식품과 관련하여 식품 표시관련 지침서, 무역활성화 작업반, 국제규격 부합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GLP기준, GMO 관련 Biotechnology 위해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한 음용수를 위한 분자 기술”에 대한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5)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ia Europe Meeting; ASEM)

아시아와 유럽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양 지역의 공동발전과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간 협력체로서 한·중·일 및 ASEAN 7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구주연합(EU) 15개 회원국의 국가원수 또는 정부수반과 EU 집행위원장등이 모여서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 아시아 유럽정상회의로써 아직은 국제기구로 발전되지는 않았다. 금년 10월 서울에서 제3차 정상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 SPS분야, 표준 및 적합성 분야에 관련하여 작업을 진행중이다.

6) UN 산하 UN환경 프로그램(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UNEP), UN개발협력프로그램(UN Developing Programme; UNDP)

UN의 각 하부 기구는 개별 기구에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하며, UNEP에서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CBD)을 운영하며 금년 1월 합의된 생물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 등의 세부 협정을 정하고 LMO(living modified organisms)의 교역 관련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7) 기타

미국, 중국, 일본, 호주, 카나다, 뉴질랜드, 칠레, EU 등과 식품과 관련하여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TA(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기 위한 양자간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결 론

지금까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당국에서 수행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두서 없이 기술해 보았다. 물론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고, 이와 같은 국민의 불안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당국에 있다고 하여도 식품을 연구하고 식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식품 관련 학자나 연구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또한 식품을 생산하는 농민이나 이를 가공하는 가공업자, 더 나아가서 공해를 유발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식품위생의 확보란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닌, 국민 모두가 책임을 지고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식품 위생행정의 최대 목표인 “국민에게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의 공급”이라는 대명제는 궁극적으로 보았을 때 생산자인 농어민과 식품 산업, 관리자인 정부, 및 소비자인 국민이 각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할 때만 이룩될 수 있으므로, 정부, 소비자, 식품 산업, 학계, 연구계가 모두 업무를 분담하고 책임을 지며 또한 서로 협력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좀 더 폭넓은 연구, 조사와 함께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좀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식품위생 정책을 펴 나갈 수 있도록 일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소비자는 식품위생의 확보를 위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겠다. 또한 식품 산업은 식품 산업을 직접 운영해 나가는 식품 산업 운영자 및 종사자의 식품위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자율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들의 인식에 오피니언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언론이 식품에 대하여 좀 더 정확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함께 각종 매스컴의 식품 관련 사항의 보도시 보도 결과에 대한 책임 의식과 좀 더 성의 있고 과학적인 접근 노력도 기대해 본다.